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 대한민국 대 전환 한국판뉴딜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1.20.(수)
기 관	책 임 자		담 당 자	
금융위원회	공정시장과장	김연준 (02-2100-2680)	허남혁 주무관 (2695)	
금융감독원	회계조사국장	홍순간 (02-3145-7290)	김세동 팀 장 (7320)	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나노스(주)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1339 불법관리청 콜센터
--	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1.20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나노스(주)</p> <p>결산기 : 2015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전자부품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(’15년 연결 : 42,362백만원, 별도 : 38,288백만원)</p> <p>- 회사 현업에서 수행한 재고실사 결과가 ERP 상 재고 현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재고 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불량·파손·진부화된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,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관련 우발부채 주식 미기재 (’15년 별도 : 10,000백만원)</p> <p>- 회사의 자회사인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(’16.1.27.)하여, 동 내용이 보고기간후 사건에 해당함에도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</p> <p>③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 과소계상 (’15년 연결 : 38,356백만원, 별도 : 26,86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영업손익 및 순현금흐름 등이 중요하게 악화되어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, 회수가능액 추정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함으로써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④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(’15년 별도 : 4,29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,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등으로 종속회사의 순자산이 과대계상 되어 있고 채권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등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손상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	<p>회 사 :</p> <p>- 증권발행제한 8월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 <p>※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같음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